

2026년도 상반기 전문임기제 가급(조종)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산림항공본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산림항공본부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8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조종가	전문임기제 가급(조종)	8명	채용일로부터 ~ 2028년 9월 30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8번 항목 참조	산림항공본부 ¹⁾ 및 소속 산림항공관리소 ²⁾

※ 임용예정시기: 2026. 10. 1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산림항공본부 소재지 : 강원도 원주

2) 소속 산림항공관리소 소재지 :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비무장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조종가	헬리콥터 조종	전문임기제 가급(조종)	○ 주·야간산불진화 및 산림재난 모니터링, 화물공수, 산악 인명구조, 재난 업무지원 등 헬리콥터 조종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및 직급별 중복응시 불가함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및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최종시험예정일): 2026.8.28.]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비 등 관련법령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이 아닌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는 응시 가능

※ 이전 산림항공본부 공고 제2026-31호에 따라 전문임기제 가급(조종)에 응시한 자는 재접수 불요함

나. 필수요건 [판단기준일(최종시험예정일): 2026.8.28.]

채용분야	직위별 필수요건
전문임기제 (가, 조종)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3) 헬리콥터 조종시간을 1,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모의비행 시간·고정익 비행시간 미포함) 4)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가진 자

다. 우대요건 등 [판단기준일(원서접수 마감일): 2026. 8. 6.]

우대요건	● 직무관련 경력 - 헬리콥터 총 비행시간¹⁾, 헬리콥터 기장 및 교관 비행시간, 헬리콥터 계기비행시간²⁾, 산림항공본부 보유기종 비행시간³⁾, 최근 비행경험(감점)⁴⁾ *자격증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국내자격증을 말함 * 각 경력은 비행시간 및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¹⁾헬리콥터 총 비행시간은 응시자격(1,500시간)을 제외한 비행시간에 한함 * ²⁾실제비행+모의비행을 합한 시간으로 인정 * ³⁾산림항공본부 보유 기종으로 각 기종별 50시간 이상만 인정(보유기종: S-64, KA-32, BELL206, AS350, KUH, CH-47) * ⁴⁾최근 비행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감점, 6개월 이내 최근 비행경험 경력(최소 2시간, 이착
------	--

	륙 3회 포함) 보유 시 감점 없음(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 군 경력은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부사관, 준사관 및 장교 경력만 인정 * 야간비행 50시간 이상 (비행경력증명서상 증빙가능하고, 모의비행은 미포함) ● 직무관련 자격증 - 계기비행 자격증명, 조종교육 증명, 보유기종 한정자격증명(CH-47, S-64, KA-32, BELL206, AS350, KUH) - 항공영어(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 <table><tr><th>구분</th><th>4등급</th><th>5등급</th><th>6등급</th></tr><tr><td>유효기간</td><td>3년</td><td>6년</td><td>영구</td></tr></table> * 항공영어등급은 EPTA 4등급 이상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가장 상위 등급 1개만 인정 (등급별 차등 배점, 중복 불인정)	구분	4등급	5등급	6등급	유효기간	3년	6년	영구
구분	4등급	5등급	6등급						
유효기간	3년	6년	영구						
가산특전 (공통)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 등급별 차등 배점(1급 3점, 2급 2점, 3급 1점)								

[필수요건·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공통사항

- 우대요건 경력의 계산은 판단기준일에 의거하여 마감함.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서류전형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서류전형 배점 기준에 해당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우대요건 참조)
- 진위확인여부등에 활용되므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별지서식 7호 등)
-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담당업무가 나. 필수요건의 관련분야 경력으로 명시되어 관련분야 근무경력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됨을 유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내·외 기업에서 필수요건의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시간제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 ※ 단, 영업(판매)직 및 단순 현장근무 기술직과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의 경우는 관련 분야에서 제외
-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될 수 있으며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 폐업사실증명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등(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고 공고된 자격요건 충족 시 합격자로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등에 관련분야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빙자료 필수 제출

<서류전형 심사기준>

1.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2. 우대요건 ('채용예정직위별 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3. 가산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보유 시 등급별 차등배점)
-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면접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전문지식: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숙련도

※ 평가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위원 1인당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2인 이상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다. 실기시험

-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구분	평가기준	평가항목
조종	기본비행	제자리비행, 제자리 선회비행·상승비행, 수평비행 선회 및 강하비행
	임무비행	담수접근, 담수, 담수이탈, 물투하
	기본 계기비행	자세회복, 계기비행전환, 무선교신 절차 등
	항공안전	비상절차(착륙 간 OEI) 등

6 시험 일정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07.27(월) ~ '26.08.06.(목)	'26.08.14. (금)	'26.08.24(월)	'26.08.27(목)~.28(금) ※응시인원에 따라 추후확정	'26.09.07.(월)
원서접수	서류전형 결과발표	면접시험 결과발표	산림항공훈련센터 모의비행훈련장치 이용 ※원주시 칠봉로 104	
'26.08.04.(화) ~ '26.08.06.(목)	'26.08.20.(목)	'26.08.26(수)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8. 4. (화) ~ 2026. 8. 6.(목) 09:00 ~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택배, 퀵 불가)**
- ※ 등기우편으로 원서접수 등 서류접수 시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인정

접수처	주소	담당자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우36357)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전문임기제 채용담당자' 앞	☎ 033-769-6009

*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

나. 제출서류

- 1) 이전 산림항공본부 공고 제2026-31호에 따라 전문임기제 가급(조종)에 응시한 경우 원서 접수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추가 접수 불요
- 2)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3) 응시원서는 집계를 이용하여 고정(스태이플러 사용 금지),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직렬(전문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기재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및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1부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전문임기제 가급: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1호(조종)/제3-2호(정비))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3-1호-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 1부(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7.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서류	○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구 분	내 용
8. 응시자격 필수요건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 모든 응시자 필수 제출 - 전문임기제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증 사본 * 앞 뒤로 복사하여 제출(모든 한정사항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복사)
9. 항공신체검사증명서 1부 (조종사에 한함): 필수서류	○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지정의사가 발급한 증명서 - 전문임기제 가급(조종) 응시자 필수 제출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12개월 이내 발행분
10. 비행경력 관련 증명서 1부 (조종사에 한함): 필수서류	○ 헬리콥터 조종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 1,500시간 이상 필수(고정익, 모의비행시간 미포함), 근무기관장이 발급한 비행경력 증명서 ○ 산림항공본부 보유기종 비행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헬리콥터 총 비행시간 증명서류 내 함께 기재하여 제출 가능 * (보유기종) AS-350, BELL206, KA-32, S-64, KUH, CH-47 ○ 최근 비행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헬리콥터 총 비행시간 증명서류 내 함께 기재하여 제출 가능
11.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1부 : 해당자에 한함	○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해당자에 한함) - (부가요건) 보유기종 자격증명, 계기비행(헬리콥터) 자격증명, 조종교육(헬리콥터) 증명 * (보유기종) AS-350, BELL206, KA-32, S-64, KUH, CH-47 - 항공정비 한정자격(전자·전기·계기), 직무관련 자격증, 정비 경력 증명,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
12.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조종사의 경우 항공영어등급이 있는 경우 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 중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유효한 상위 등급 1개만 인정 (중복불인정)

구 분	내 용
13.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필수서류	○ 해당자에 한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 등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별지서식 제8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헬리콥터 정비 경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군관련 경력이 있을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군무원-재직증명서, 군인-군경력증명서 등) - 군경력증명서의 경우 기간 별 담당업무 명확히 기재하여야하며, 경력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탐승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력증명서상에 명시되어야 인정가능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시험에 한함

※ 우대요건 증명서류 중 경력(재직)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전임·비전임(주당 근무시간) 여부,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직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 할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비전임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포함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역 하단 **참고** 부분 확인)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0. 1.(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 ※ 단, 결격사유 등이 없을 시 행정안전부 전문임기제 기간연장 협의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6항에 따라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 공무원’에 한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단위로 채용기간 연장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 「2026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216호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가급	-	69,663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관련분야 경력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관련분야 자격증 등)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발생할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최종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항공본부 인사·정보화팀(☎033-769-6009)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민원증명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PC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민원증명 서비스**입니다.

- 현 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2의 규정을 따릅니다.

민원증명

- 국세증명신청
- 1. 사실증명신청**

민원증명 원본확인 (수요처 조회)

문서위변조방지 및 처벌안내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민원증명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등 연중무휴 24시간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연중무휴 08:00 ~ 22:00
- 사실증명발급신청 연중무휴 09:00 ~ 24:00

민원증명 이용절차

- 01 홈택스 로그인
- 02 민원증명 신청진행
- 03 민원증명 처리결과
-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2. 소득금액증명

민원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납세증명서(국세관납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연금보험료용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퇴사업장증명
- 모범납세자증명
- 국세납세증명 조회(정부관리기관용)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주택임대차계약확인증 가입 및 과세특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등)】

-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중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중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 ③ 2024년 6월 1일 전에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이 법 시행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중전의 「아동복지법」(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포함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중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를 포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직무기술서(조종 가)

코드번호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조종 가	헬리콥터 조종	전문임기제 가급(조종)	8명	산림항공본부 및 소속관리소

주요업무	○ 헬리콥터 조종 및 항공사고 방지 ○ 헬리콥터에 의한 주야간 산불예방 진화 및 산림재난 모니터링 등 산림보호 ○ 화물공수, 산악인명구조, 재난업무지원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정비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 항공안전 및 주야간 산불진화 관련 기술,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산림항공의 특수성 및 해외 사례 분석에 필요한 지식 ○ 항공기상 및 항공 교통 관제 지식
------	---

응시 자 격 요 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 헬리콥터 조종	
	자격 및 경력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 헬리콥터 조종시간을 1,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가진 자
우대요건		○ 직무관련 헬리콥터 조종경력 - 헬리콥터 총 비행시간, 헬리콥터 기장 및 교관 비행시간, 헬리콥터 계기비행시간(실제비행+모의비행), 보유기종 비행시간, 최근 비행경험등 ○ 계기비행 자격, 조종교육 경력, 보유기종 자격 ○ 항공영어등급(4등급 이상) - EPTA 4등급 이상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 중 상위 등급 1개만 인정(중복불인정)
가산특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응시직급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필수자격증 사본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⑧ 우대자격증 사본 또는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⑨ 주민등록초본(남성 병역사항 기재본)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 제출 ☐ 미제출
⑪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2026. . .

성명: (서명)

산림항공본부장 귀하

응시원서 (원본)

산림항공본부장 귀하

본인은 산림항공본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가급(정비)	
응시자격		경력(정비가)	
※응시번호	담당자 기재란(공란)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수입인지 별첨가능)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응시직급 및 분야			
응시자격		경력(정비가)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산림항공본부 인사정보화팀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예) 직급: 전문임기제 가급(정비)
 -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자격요건 중 선택
- 예) 경력(정비가)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금융기관에서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전자수입인지 별첨가능)
- 전문임기제 가·나급 10,000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 제3-1호】 ※ 채용분야 직무기술서 ‘전문임기제 가급(조종)’ 필독
이 력 서(조종사)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직급		성 명	

나. 응시자격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비 고
신 체 검 사	제출여부	검사일	유효기간	비 고
	✓	20**. *월*일.	20**. *월*일.	

조 종 시 간	일자	헬리콥터 형식 - 헬리콥터 모델에 대해서만 작성 ※ 고정익 항공기는 비행시 간에 포함 되지 않음	기장·교관 비행시간	그 외 비행시간 - 부기장, 학생조종자, 항 공기관사 포함	계기비행 (실제+모의)
	(	조 종 시 간	상 세	작 성	)

다. 우대사항				
자 격	자격증명	자격 취득(예정)일	등록번호	자격 검정기관

경 력	내용	기간	비 고

라. 가산요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등급	취득일(기준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성 명 : (인)	

※ 2장 이내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 ③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공공A분야 경력 요건 중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8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격증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④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자격증 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

-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색은 검정색
-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	--	-----------	--

◎ 직무수행계획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A4용지 2매 이내 작성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산림항공본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산림항공본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105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논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산림항공본부장 귀하

【별지 제8호】

경 력 (재 직) 증 명 서

기관 현황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경 력 사 항	①근무기간		기 간	직위 (직급)	근무부서	②담당업무	③근무시간 (전임/비전임)
	부 터	까 지					
							주당근무시간
근무 연한	3 년 1 월 일(0 개월)			퇴직사유			
휴직 사항	휴직기간		기 간	휴직사유			
	부 터	까 지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기 관	연월일	종 류	기 관	
	2024.05.31.	차관급표창	강원도지사				
발급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발급부서	
직 급	
담 당 자	(인)
연 락 처	

회 사 명 (직인)

- ① 근무기간 : 응시자격 필수요건 관련분야 경력 근무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② 담당업무 : 근무기간 동안 구체적 업무 기재
 (예) 무선국 운영, 헬리콥터 기장, 헬리콥터 정비, 산불진화 업무 등
 ③ 근무형태 : 전임/비전임 여부 구분(주당 근무시간)
 ※ 발급자 및 기관대표자 명의 반드시 날인(경력사항 등이 명확한 경우 발행기관 별도 양식 사용가능)
 ※ 휴직사항: 경력기간 중 휴직사항 있을 경우 사유 및 휴직기간 기재

2026년 산림항공본부 전문임기제 가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철회원

- ▶ 채용구분 : 2026년 상반기 전문임기제 가급·나급 경력경쟁채용
- ▶ 성 명 :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전문임기제 _____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_____ 사유로 인해 **응시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일 자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산림항공본부장 귀하